

1998. 2. 18 제7차개정(통계청 고시 제 1998-1호)

개정부분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신·구 비교표

1998

통 계 청

1,500,000

1998. 2. 18
통계청
5.1

1998
461

통계청 고시 제 1998-1 호

통계청 고시 제 91-1호(1991. 9. 9)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내용중 일부를 통계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별항(개정부분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신·구 비교표)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8년 2월 18일

통 계 청 장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 91-1호 : 1991. 9. 9)내용 중 이번에 개정 고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

◀ 일 러 두 기 ▶

우리청에서는 각종 산업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N의 국제표준 분류를 기초로 1963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제정한 이래 1991년 제6차개정(통계청고시 제91-1호 : 1991. 9. 9)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N에서는 제3차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의 일부를 수정하여 이를 각국에서 사용토록 권고된 바, 그 수정내용과 현행 산업분류방식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일부 사항 및 오기사항 등을 반영하여 동 분류 내용중 일부를 통계법 제 17조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면개정에 앞서 실시된 부분개정으로 지금까지 발간하여 사용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 91-1호 : 1991. 9. 9)내용중에서 이번에 개정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계속사용 할 수 있도록 그 개정내용만을 발췌, 신·구 대비표를 별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내용중에서 이번에 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속 효력을 갖게 되므로 이번 개정내용만을 보완하여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998. 2.

통계기획국장 남 번

목 차

고 시
일리두기

신·구 비교표

1.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3,1989)의 수정권고내용을 반영한 개정	5
2.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미흡한 부문에 대한 개정	15
가. 현행 “1811:개인마춤복제조업”과 “1812:기성복제조업”분류에 대한 개정	15
나. 현행 “92493:공원 및 휴양림 관리운영업”분류에 대한 개정	23
3.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교정착오사항을 반영한 개정	24

1.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3, 1989)의 수정권고내용을 반영한 개정

현행 분류 (1991. 9. 9. 고시 내용)	개정 사항	개정 근거
<p>“1532:전분 및 당류제조업” (Manufacture of starches and maltose)</p> <p>옥수수, 쌀 및 기타 곡물,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외> · 감자의 분 및 조분의 제조 (1513) · · 인조꿀, 캐러멜당 및 <u>이눌린</u>의 제조 (1545)</p>	<p><제외></p> <p>· “이눌린” 삭제</p>	<p>· “이눌린”은 전분제품이므로 “15321(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으로 분류</p>
<p>“15321:전분 및 전분제품제조업” (Manufacture of starches and starch products)</p> <p>각종 곡물, 감자,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 · 전분 제조 ·</p>	<p><포함></p> <p>· “이눌린 제조” 추가</p>	
<p>“15459:달리분류되지않은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Manufacture of condiments and food additive products n.e.c.)</p> <p>달리분류되지않은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 · 커피크리머 제조 · <u>이눌린 제조</u> ·</p> <p><제외> · 효모, 누룩제조 (15455)</p>	<p><포함></p> <p>· “이눌린 제조” 삭제</p> <p><제외> · “이눌린 제조 (15321)” 추가</p>	

<p>현행 분류 (1991. 9. 9. 고시 내용)</p>	<p>개정 사항</p>	<p>개정 근거</p>
<p>“1551: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Distilling, rectifying and blending of spirits; ethyl production from fermented materials)</p> <p>곡식, 과일 및 채소 등을 발효하고, 이를 증류 또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외> · <u>에틸알콜 이외의 알콜제조(2411)</u> ·</p>	<p><제외> · 변성에틸알콜제조(2411)”로 수정</p>	<p>· 변성에틸알콜 제조산업은 “2411(기초화합물제조업, 비료 제외)”로 분류</p>
<p>“20299: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나무 및 콜크 제품 제조업”(Manufacture of other wood and cork products n.e.c.)</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으로서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 · 목재 옷걸이 제조, 비입식 · · <u>목관 제조</u> · 목재 스펀, 쿱, 보빈, 리일 및 이와 유사 제품 제조</p>	<p><포함> · “목관 제조” 삭제 · “스푼, 보빈” 삭제</p>	<p>· 목관제조 등 매장용 관 제조산업은 “369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p> <p>· 섬유산업용 목재 스펀과 보빈제조는 섬유산업용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주로 제조되므로 “29269(달리분류되지않은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용 기계 제조업)”으로 분류</p>
<p>“2230:기록매체 복제업”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p> <p>레코드, 오디오, 컴퓨터테이프의 원판을 복사하여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외>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각종 인쇄물을 각종 인쇄술에 의한 인쇄활동 (2221) ·</p>	<p><제외> · “표준영화필름 복제 (9211)” 추가</p>	<p>· 표준영화필름 복제는 “9211(영화제작 및 배급업)”에 분류</p>

<p style="text-align: center;">현 행 분 류 (1991. 9. 9. 고시 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사 항</p>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근 거</p>
<p>“24117: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업” (Manufacture of gum and wood chemicals)</p> <p>유연제 엑스를 제외한 천연수지, 나무 및 식물성 피치 등을 중류하여 유연제이외의 회발성물질 및 기타 관련제품을 여기에 포함된다.</p>	<p>“유연제 엑스를 제외한 천연수지, 나무 및 식물성 피치 등을 중류하여 유연제이외의 중류물질 및 기타 관련제품을 여기에 포함된다”로 수정</p>	<p>· 목재를 중류방식에 의한 물질추출은 “24117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업)”로 분류</p>
<p>“28931:날붙이 제조업”(Manufacture of cutlery)</p> <p>식탁용이외의 각종 용도의 칼 및 칼날, 가위, 비전기식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 · 날붙이 제조 ·</p> <p><제외> · 기계용 칼 및 칼날 제조 (28936) · 무기용 대검 및 칼집 제조 (28999)</p>	<p><포함> · “무기용 대검 및 칼집 제조” 추가</p> <p><제외> · “무기용 대검 및 칼집 제조 (28999)” 삭제</p>	<p>· 손에 쥐는 예리한 물건은 “28931(날붙이제조업)”에 분류되며, “28999(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조립금속제품제조업)”에서 삭제</p>
<p>“28999: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Manufacture of other fabricated metal products n.e.c.)</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조립금속제품제조업으로서 체인(동력전달용 제외)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 · 철강제 체인(연접링크체인 및 동력전달용 제외) 및 그 부분품 제조 ·</p> <p>· 무기용 대검 및 칼집 제조</p>	<p><포함> · “무기용 대검 및 칼집 제조” 삭제</p>	<p>· 손에 쥐는 예리한 물건은 “28931(날붙이 제조업)”에 분류</p>

<p>원 행 분 류 (1991. 9. 9. 고시 내용)</p>	<p>개 정 사 항</p>	<p>개 정 근 거</p>
<p>“29210:농업용 기계 제조업” (Manufacture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 농토의 경운, 쇄토 및 정지, 작물의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 · 농업용 기계 제조 ·</p> <p><제외> · 농업, 원예, 임업용 수공구 제조 (28934) ·</p>	<p><제외> · “종자, 곡물 또는 건조된 채두류의 불순물제거기 및 선별기 제조 (29252)” 추가</p>	<p>· 종자, 곡물 또는 채두류의 불순물제거기 및 선별기 제조산업은 “29252(곡물가공 및 처리기 제조업)”로 분류</p>
<p>“2925:음식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Manufacture of machinery for food, beverage and tobacco processing) 농장형의 것을 제외한 우유가공, 곡물가공,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외> · 가열장치 또는 기계적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통, 탱크제조 (2812) ·</p> <p>· 조란, 과일, 곡물의 세척·분류·선별기 제조 (2921)</p>	<p><제외> · “곡물” 삭제</p>	<p>· 곡물세척·분류·선별기 제조산업은 “29252(곡물가공 및 처리기 제조업)”으로 분류</p>
<p>“29261:재봉기제조업”(Manufacture of sewing machines) 가정용의 것을 포함하며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 · 재봉기용 바늘과 동 부분품 제조 ·</p> <p>· 재봉기장치용 캐비닛, 밀판 및 덮개 제조</p>	<p><포함> · “재봉기장치용 캐비닛, 밀판 및 덮개 제조” 삭제</p>	<p>· 재봉기장치용 캐비닛, 밀판 및 덮개 제조산업은 원래 “3610(가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를 수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 분류 (1991. 9. 9. 고시 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 근거</p>
<p>“3610:가구 제조업” (Manufacture of furniture)</p> <p>각종 재료(석재, 시멘트 또는 도자제 제외)로 실험실장비가 장착된 가구는 제외된다.</p> <p><제외> · 조명장치 및 조명등 제조 (3150) · · <u>시계, 재봉기 및 기타 기기용으로 특수설 계, 제작된 장치용 캐비닛 및 케이스의 제조 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활동 영역에 각각 분류</u> ·</p>	<p><제외></p> <p>· “시계, 재봉기 및 기타 기기용으로 특수 설계, 제작된 장치용 캐비닛 및 케이스의 제조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활동 영역에 각 각 분류” 삭제</p> <p>· “시계케이스 제조 (33302)” 추가</p>	<p>· 재봉기, TV, 오디오용 등의 캐비닛, 밀판 및 덮개 제조산업은 “3610(가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함.</p>
<p>“36999: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제조업”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n.e.c.)</p> <p>달리분류되지않은 소도구 및 화장용품, 마네킹 및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 · 빗, 헤어슬라이드 제조 · 머리핀 제조 ·</p>	<p><포함></p> <p>· “매장용 관 제조” 추가</p>	<p>· “20299(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나무 및 콜크 제품 제조업)”의 변동울 반영하기 위함</p>
<p>“222:상업인쇄 및 인쇄관련서비스업” (Commercial printing and service activities related to printing)</p> <p>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u>사진복사식 또는 열복사식</u> 포함된다</p>	<p>· “사진복사식 또는 열복사식” 삭제</p>	<p>· “사진복사식 또는 열복사식”의 복사서비스는 “74997(사무관련 대리서비스업)”에 분류</p>

<p>현 행 분 류 (1991. 9. 9. 고시 내용)</p>	<p>개 정 사 항</p>	<p>개 정 근 거</p>
<p>“63049:달리분류되지않은 수상운수유지서비스업” (Supporting water transport activities n.e.c.)</p> <p>달리분류되지않은 수상운수 및 관련 유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 · 등대운영 ·</p> <p><제외> · 해상터미널시설 운영 (63041)</p>	<p><제외> · “유람선의 선착장에 관련된 도킹시설 운영(9249)” 추가</p>	<p>· 선착장을 “9249(기타 오락관련사업)”에 포함시키려 했던 원래의 의도를 명확히 함</p>
<p>“6719:달리분류되지않은 금융관련 서비스업”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intermediation n.e.c.)</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금융관련 서비스업으로서 금융자문,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제외> · 보험과 연금에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대리인 등 활동 (6720)</p>	<p><제외> · “사업중개와 산업재산권 중개활동 (7499)” 추가</p>	<p>· 금융자산 중개활동과 산업재산권 중개 활동을 구분</p>

<p style="text-align: center;">현 행 분 류 (1991. 9. 9. 고시 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사 항</p>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근 거</p>
<p>“67199: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 (Other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intermediation n.e.c.)</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으로서 수표의 현금화, 외환교환서비스</p> <p>..... <u>특허권과 저작권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u>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함> · 외국환서비스 · 통화포장 서비스 ·</p> <p>· <u>특허권중개, 임차서비스</u> · <u>저작권중개, 임차서비스</u> ·</p>	<p>“특허권과 저작권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 삭제</p> <p><포함></p> <p>· “특허권중개, 임차서비스” 삭제 · “저작권중개, 임차서비스” 삭제</p>	<p>· 금융자산 중개활동과 산업재산권 중개활동을 구분</p>
<p>“70123:토지개발공급업” (Land development)</p> <p><u>묘지</u>, 택지, 농지 및 농장</p> <p>.....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 · <u>묘지개발분양·판매</u> · 용지개발분양·판매 ·</p>	<p>· “묘지” 삭제</p> <p><포함> · “묘지개발분양·판매” 삭제</p>	<p>· “묘지개발분양·판매”는 “9303(장외사 및 묘지관리업)”으로 분류</p>
<p>“71210:농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Renting of agricultural machinery and equipment)</p> <p>운전자 없이 <u>농업용</u> 기계장비를 주로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 · <u>농업용</u> 기계 및 장비 임대 (운전자 없이)</p>	<p>· “농업용”⇒“농업 및 임업용”으로 수정</p>	<p>· 활동면에서 임업은 항상 농업과 같이 분류</p>

<p>현행분류 (1991. 9. 9. 고시 내용)</p>	<p>개정사항</p>	<p>개정근거</p>
<p>“74141: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Arbitration and public relation services)</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공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u>노사간 또는 사업체간의 중재, 조정 및 화해서비스</u>.....수행될 수 있다.</p> <p><포함> · <u>경영관련 중재 및 조정서비스</u></p>	<p>“노사간 또는 사업체간의 중재, 조정 및 화해서비스” 삭제</p> <p><포함> · “경영관련 중재 및 조정서비스” 삭제</p>	<p>· “중재, 조정 및 화해서비스”는 구속력이 있는 법적 연관성을 지니며, 법정의 결정에 의한 중재(화해)와 유사하다. 즉, 중재인의 활동과 화해서비스는 “7411(법무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p>
<p>“7130:달리분류되지않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Renting of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n.e.c.)</p> <p>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섬유, 의복 및 신발, 가구, 도자기 및<u>오락용 기구 및 관련 설비, 목마</u> 여기에 포함된다.</p>	<p>“오락용 기구 및 관련 설비, 목마” 삭제</p>	<p>· “9249(기타 오락관련 산업)”로 분류</p>
<p>“71303: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Renting of sporting and recreational equipment)</p> <p>각종 운동, 오락, 여가 및 유희용품을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 · 운동, 경기용 장비 임대 · <u>목마 및 자전거 임대</u> · <u>오락용 기구 및 관련설비 임대</u> · <u>오락용 보트 및 관련설비 임대(조작자 없이)</u></p>	<p><포함> · “목마 및” 삭제 · “오락용 기구 및 관련설비 임대” 삭제 · “오락용 보트 및 관련설비 임대 (조작자 없이)” 삭제</p>	<p>· “9249(기타 오락관련산업)”로 분류</p>

<p style="text-align: center;">원 행 분 류 (1991. 9. 9. 고시 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사 항</p>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근 거</p>
<p>“7499: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Other business activities n.e.c.)</p> <p>일반적으로 산업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연예인 대리활동 등이 분류된다.</p> <p><제외> · 신용카드발행 운영 (6592) ·</p>	<p><포함>관 신설 · 특허권중개, 임차서비스 · 저작권중개, 임차서비스</p> <p><제외> · “경매에 의한 자동차 도매 (5011)” 추가</p>	<p>· “67199(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서 분리</p> <p>· 판매방법을 불문한 모든 자동차판매는 “501(자동차판매업)”에 분류</p>
<p>“9211:영화제작 및 배급업” (Motion picture and video production and distribution)</p> <p><제외> ·</p> <p>· <u>오디오 또는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원판의 단순 복제활동(2230)</u> ·</p>	<p><제외></p> <p>· “표준영화필름을 제외한 오디오 또는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원판의 단순 복제활동 (2230)”으로 수정</p>	<p>· 필름, 오디오 또는 비디오테이프 복제가 동일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영화필름 복제처럼 동일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테이프 복제는 “2230(기록매체 복제업)”으로 분류되며, “영화필름 복제는 “9211(영화제작 및 배급업)”에 분류</p>
<p>“92499: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오락관련 산업” (Other recreational activities n.e.c.)</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오락관련 산업으로서 농업 박람회 운영 및 여기에 포함된다.</p> <p><포함> · 농업박람회 운영 ·</p> <p><제외> · 자전거, 경기용품 및 기타 오락용품 임대 (71303)</p>	<p><포함> · “목마, 오락용 보트, 오락용 기구 및 관련 설비 임대” 추가</p> <p><제외> · “및 기타 오락용품” 삭제</p>	<p>· “71303(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에서 분리</p>

<p>현행 분류 (1991. 9. 9, 고시 내용)</p>	<p>개정 사항</p>	<p>개정 근거</p>
<p>“93031:장의사 및 관련 서비스업” (Funeral and related activities)</p> <p>장의사, 장례장운영, 관의 판매 및 임대 등 장의관련 서비스를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의사 <p><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묘지개발 및 분양 (70123)</u> · 	<p><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지개발 및 분양” 추가 <p><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지개발 및 분양 (70123)”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123(토지개발공급업)”에서 분리

2.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미흡한 부문에 대한 개정

가. 현행 “1811:개인마춤복제조업”과 “1812:기성복제조업”분류에 대한 개정

현행 분류	개정 분류	비고
<p>181 의복제조업(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except fur apparel)</p> <p>구입한 각종 직물, 가죽 및 기타 재료(모피 제외)를 재단·재봉하여 의복류, 모자 및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가 직접 고안 또는 구상한 의복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계약사업체에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p> <p><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조의복 제조 또는 편조원단을 제조한 사업체가 이를 직접 재단·재봉하여 의복 제조(1730) · 신발제조(1920) · 재봉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봉합·접착한 고무 및 플라스틱 의복제조(2519 또는 252) · 안전모의 제조는 그 주된 재료에 따라(252 또는 2891) · 석면 의류 제조(2699) · 경기용 장갑 및 경기용 모자 제조(3693) · 의복수리활동(5260) 	<p>181 의복제조업(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except fur apparel)</p> <p>1810 의복제조업(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except fur apparel)</p> <p>현행분류 “181:의복제조업”의 해설내용과 동일함</p>	<p>· 현행분류 1811(개인마춤복제조업)과 1812(기성복제조업)를 개정분류 1810(의복제조업)에 통합</p>

현행분류	개정분류	비고
<p>1811 개인 맞춤복 제조업(Manufacture of individual custom tailoring)</p> <p>개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인의 체형이나 요구에 맞게 재단 및 재봉하여 양복, 정장복, 양장, 한복 등의 남녀용 외의, 소아용 외의, 셔츠, 작업복 및 관련의복을 개인맞춤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인맞춤 여부를 불문하고, 의복액세서리와 가죽의복의 제조는 기성복 제조업에 분류된다. 유니폼을 단체주문 제조할 경우라도 그 의복 대금을 개인이 부담할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p>	<p>삭제</p>	<p>· 개정분류 1810(의복제조업)에 통합</p>
<p>18111 남자용 개인맞춤 양복 제조업 (Manufacture of man's and boy's suit, coats and overcoats-custom tailoring)</p> <p>일상, 사무, 무대 및 공식행사에서 입는 양복, 정장복, 양복조끼, 코트 및 오버코트 등 남자용 개인맞춤양복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복 제조, 남자용, 개인맞춤 · 정장복 제조, 남자용, 개인맞춤 <p><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별도의 하의, 작업복, 잠바, 승마복, 정장 이외의 유니폼, 가죽옷, 방수코트 등의 개인맞춤 제조 (18113 또는 18119) 	<p>삭제</p>	<p>· 개정분류 18101(남자용 양복제조업)에 통합</p>

현행분류	개정분류	비고
<p>18112 여자용 개인마춤 양장 제조업 (Manufacture of women's and girl's outerwear-custom tailoring)</p> <p>일상, 사무, 무대 및 공식행사에서 입는 원피스, 튜피스, 쓰리피스, 코트 등의 여자용 개인마춤양장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 · 여자용 양장의 제조, 개인마춤 · 양장의류 제조, 개인마춤, 여자용</p> <p><제 외> · 전통적 또는 민속적 의상 및 별도의 하의, 스커트, 브라우스, 셔츠 등의 개인마춤 제조 (18113 또는 18119)</p>	삭 제	<p>· 개정분류 18102(여자용 양장제조업)에 통합</p>
<p>18113 개인 마춤한복 제조업 (Manufacture of korean clothes-custom tailoring)</p> <p>남녀 및 소아용을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의 개인 마춤복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 · 한복 제조, 남녀용, 개인마춤</p>	삭 제	<p>· 개정분류 18107(한복제조업)에 통합</p>
<p>18119 달리분류되지않은 개인마춤복 제조업 (Manufacture of individual custom tailoring n.e.c.)</p> <p>달리분류되지않은 개인마춤복 제조업으로서 남녀용을 불문하고, 별도의 하의, 작업복, 잠바, 셔츠 및 브라우스, 체육복, 잠옷, 수영복 및 경기복, 방수코트 등의 개인마춤복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 · 개인 마춤복(정장복 제외) 제조, 남녀용</p>	삭 제	<p>· 의복종류에 따라 개정분류 18103(소아용외의제조업), 18104(셔츠, 작업복 및 관련 의복제조업), 18105(내의제조업), 18109(달리분류되지않은 의복제조업)에 각각 분할</p>

현행분류	개정분류	비고
<p>1812 기성복 제조업 (Manufacture of ready-to-wearing apparel)</p> <p>개인마춤복이 아닌 각종 의복, 모자(모피제 포함) 및 의복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피의복 제조 (1820)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분류 1810(의복제조업)에 통합
<p>18121 남자용 기성양복 제조업(Manufacture of men's and boy's suits, coats and overcoats-ready)</p> <p>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양복, 정장복, 양복조끼, 코트 및 오버코트 등 남자용 기성양복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장복 제조, 기성, 남자용 · 기성양복 제조, 남자용 	<p>18101 남자용 양복제조업(Manufacture of men's and boys' suits, coats and overcoats)</p> <p>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양복, 정장복, 양복조끼, 코트 및 오버코트 등 남자용 양복 및 관련 의복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장복제조, 남자용 · 양복제조, 남자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분류 18101(남자용 양복제조업)은 현행분류 18111(남자용 개인마춤양복제조업)과 18121(남자용 기성양복제조업)을 통합
<p>18122 여자용 기성양장 제조업 (Manufacture of women's and girl's outwear- ready)</p> <p>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코트 등의 기성양장 및 관련의복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양장 제조, 여자용 · 정장의류 제조, 기성, 여자용 	<p>18102 여자용 양장제조업(Manufacture of women's and girls' outwear)</p> <p>드레스,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정장복, 오버코트, 코트, 재킷, 슬랙스, 스커트 등의 양장 및 관련 의복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장제조, 여자용 · 정장의류제조, 여자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분류 18102(여자용 양장제조업)는 현행분류 18112(여자용 개인마춤양장제조업)와 18122(여자용 기성양장제조업)를 통합

현행분류	개정분류	비고
<p>18123 소아용 기성외의 제조업(Manufacture of outwear for young children and infants-ready)</p> <p>소아용 드레스,브라우스, 웨이스트, 셔츠, 코트, 양복, 반바지, 잠방이, 스포츠, 스랙스, 비치웨어 등 남녀 소아용 외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용 기성외의 제조 	<p>18103 소아용 외의제조업(Manufacture of outwear for young children and infants)</p> <p>소아용 드레스, 블라우스, 웨이스트, 셔츠, 코트, 양복, 반바지, 잠방이, 스포츠, 슬랙스, 비치웨어 등 남·녀 소아용 외의 및 관련 의복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 개정분류 18103(소아용 외의제조업)은 현행분류 18119(달리분류되지않은 개인마춤복제조업)일부와 18123(소아용 기성외의제조업)을 통합</p>
<p>18124 셔츠, 작업복 및 관련 기성복 제조업(Manufacture of shirts, work colthes and related garments-ready)</p> <p>스포츠 셔츠, 하의, 반바지, 잠바, 작업복, 수영복, 여가복, 체육복, 경기제복 등 남자전용 및 남녀가 공동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의복류를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셔츠 제조, 남녀용, 기성 · 작업복 제조, 남녀용, 기성 · 기성복 제조(정장복 제외), 외의 	<p>18104 셔츠, 작업복 및 관련 의복 제조업(Manufacture of shirts, working clothes and related garments)</p> <p>스포츠 셔츠, 하의, 반바지, 잠바, 작업복, 수영복, 여가복, 체육복, 경기제복 등 남자전용 및 남·녀가 공동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의복류를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셔츠 제조, 남녀용 · 작업복 제조, 남녀용 	<p>· 개정분류 18104(셔츠, 작업복 및 관련 의복 제조업)는 현행분류 18119(달리분류되지않은 개인마춤복제조업)일부와 18124(셔츠, 작업복 및 관련 기성복 제조업)를 통합</p>

현행분류	개정분류	비고
<p>18125 내의 제조업(Manufacture of under-garments)</p> <p>구입한 직물 또는 편조원단을 재단·재봉하거나, 직물과 편조물을 결합하여 남녀용 각종 내의, 잠옷, 브래지어, 콜셋, 팬티, 거들, 히프벨트, 임신부복띠, 케미술, 슈미즈, 패티코트, 슬립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립 제조 · 내의제조, 기성, 남녀용 · 패티코트 제조 · 잠옷제조, 기성, 남녀용 	<p>18105 내의제조업(Manufacture of under-wear)</p> <p>구입한 직물 또는 편조원단을 재단·봉제하거나, 직물과 편조물을 결합하여 남·녀용 각종 내의, 잠옷, 브래지어, 콜셋, 팬티, 거들, 히프벨트, 임신부복띠, 케미술, 슈미즈, 패티코트, 슬립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립 제조 · 내의제조, 남·녀용 · 패티코트 제조 · 잠옷제조, 남·녀용 	<p>· 개정분류 18105(내의제조업)는 현행분류 18119(달리분류되지않은 개인마춤복제조업) 일부와 18125(내의제조업)를 통합</p>
<p>18126 가죽 의복 제조업(Manufacture of leather garments)</p> <p>성별이나 개인마춤 여부를 불문하고, 천연 및 합성가죽으로 의복을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죽의류 제조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죽제 모자, 장갑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는 (18127, 18128 또는 18129)에 각각 분류 	<p>18106 가죽의복 제조업(Manufacture of leather garments)</p> <p>천연 및 합성가죽으로 남·녀용 가죽의복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죽의류 제조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죽제 모자, 장갑 제조 (18108) · 가죽제 의복 액세서리 제조 (18109) 	<p>· 개정분류 18106(가죽의복 제조업)은 현행분류 18126(가죽의복제조업)과 내용 동일</p>
	<p>18107 한복제조업(Manufacture of Korean clothes)</p> <p>남·녀 및 소아용을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 제조, 남·녀용 	<p>· 개정분류 18107(한복제조업)은 현행분류 18113(개인마춤한복제조업)과 18129(달리분류되지않은 기성복 제조업) 중 한복제조를 통합</p>

현행 분류	개정 분류	비고
<p>18127 모자 제조업(Manufacture of hats)</p> <p>펠트, 엮은 재료, 가죽, 모피, 직물, 깃 등으로 남녀용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군 또는 소방관용 헬멧 포함)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 제조, 각종 재료 · 모자 부분품 제조, 각종 재료 · 헬멧 제조, 군용 또는 소방관용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장식물 제조 (17293) · 모자 편조 (17309) · 고무모자 제조 (25193) · 주형플라스틱 모자 제조 (252) · 철모 제조 (28999) · 운동 경기용 보호모자 제조 (36932) 	<p>18108 모자 및 장갑제조업(Manufacture of hats and gloves)</p> <p>펠트, 엮은 재료, 가죽, 모피, 직물, 깃 등으로 남·녀용 모자를 제조하거나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군 또는 소방관용 헬멧 포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가죽, 합성가죽, 모피, 직물 등으로 장식용, 방한용, 작업용의 장갑을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분류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 제조, 각종 재료 · 모자 부분품 제조, 각종 재료 · 헬멧 제조, 군용 또는 소방관용 · 장갑(가죽, 모피, 직물제) 제조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장식물 제조 (17293) · 모자 편조 (17309) · 고무모자 제조 (25193) · 주형 플라스틱모자 제조 (252) · 철모 제조 (28999) · 운동경기용 보호모자 제조 (36932) · 편조장갑 제조 (17305) ·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 (36932) 	<p>· 개정분류 18108(모자 및 장갑제조업)은 현행 분류 18127(모자제조업)과 18128(장갑제조업)을 통합</p>

현행분류	개정분류	비고
<p>18128 장갑 제조업(Manufacture of gloves)</p> <p>가죽, 합성가죽, 모피, 직물 등으로 장식용, 방한용, 작업용의 장갑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갑(가죽, 모피, 직물제) 제조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조장갑 제조 (17305) · 골프 및 권투용 글러브 제조 (36932)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분류 18108(모자 및 장갑제조업)로 통합
<p>181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성복 제조업 (Manufacture of ready-to-wearing apparel n.e.c.)</p> <p>달리분류되지않은 기성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별개 이외의 의복과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울 제조 · 스카프 제조 · 머플러 제조 · 만틸라 제조 · 베일 제조 · 넥타이 제조 · 의류 액세서리 제조 · 학사복(기성복) 제조 · 벨트 제조, 의복용 · 띠 제조, 의복용 · 종교 의식복(기성복) 제조 · <u>무대 의상복(기성복) 제조</u> · <u>한복(기성복) 제조</u> · <u>방수복(기성복) 제조</u> · 의류 부분품 제조 · 손수건 제조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벨트 및 기타 산업용 섬유제품 생산 (17299) · 가죽제 시계줄 제조 (19125) 	<p>18109 달리분류되지않은 의복제조업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n.e.c.)</p> <p>달리분류되지않은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별개 이외의 의복과 의복액세서리를 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울 제조 · 스카프 제조 · 머플러 제조 · 만틸라 제조 · 베일 제조 · 손수건 제조 · 벨트 제조, 의복용 · 띠 제조, 의복용 · 넥타이 제조 · 의류 액세서리 제조 · 가운데류(종교의식복, 학사복 등)제조 · 의류 부분품 제조 <p><제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벨트 및 기타 산업용 섬유제품 생산 (17299) · 가죽제 시계줄 제조 (19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분류 18109(달리분류되지않은 의복제조업)는 현행분류 18119(달리분류되지않은 개인마춤복제조업) 일부와 18129(달리분류되지않은 기성복제조업)를 통합 · 단, 현행분류 18129(달리분류되지않은 기성복제조업)에 포함된 한복(기성복) 제조는 개정분류 18107(한복제조업)에 포함되고, 방수복 및 무대의상복은 분류기준 혼선으로 삭제

나. 현행 “92493:공원 및 휴양림 관리운영업”의 분류에 대한 개정

현행 분류	개정 분류	비고
<p>“9233: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보존관리업” “92331: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2332:자연보존관리업”</p> <p>“92493:공원 및 휴양림 관리 운영업 유원지 등을 제외한 공원, 휴양림을 관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 · 공원관리운영 · 휴양림관리운영</p> <p><제외> · 유원지운영 (92192)</p>	<p>“9233: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보존관리업” “92331: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2332:자연보존관리업”</p> <p>“92333: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Operation of nature park and rest-forest) 일반대중에게 관람, 교육, 휴식, 휴양용 자연공원 및 휴양림을 관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 · 자연공원, 휴양용 · 휴양림 운영</p> <p><제외> · 유원지 운영(92192) · 자연보존 및 야생동식물보호기관(92332) · 오락공원관리운영 (92493)</p> <p>“92493 :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운영업”(Operation of recreational and sports park including similar activities) 일반인들이 여가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코트, 운동장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조성된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p> <p><포함> · 체육공원 운영</p> <p><제외> · 유원지운영업(92192) · 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92333)</p>	<p>· 현행분류 92493(공원 및 휴양림관리운영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정분류 92333(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의 세세분류 항목 신설</p> <p>· 현행분류 명칭을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자연공원 및 휴양림운영업은 92333(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으로 -----분리 신설</p>

3.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교정착오 사항을 반영한 개정

현행 분류	개정 사항	개정 사유
“210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각종 섬유물질을 종이, 판지 및 <u>파이버보드</u> 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및 파이버보드” 삭제	• “파이버보드 제조”는 “20213: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에 분류되어 있음
“25291: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u>성형</u> 비발포, 비강화 성형하여 각종 기계 을 말한다.	• “성형” 삭제	• 오식을 정정함
“26106: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제외> • 구입한 1차유리를 가공하여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 (<u>26101</u>)	• “(26102)”로 정정	• 오식을 정정함
“26107: 광학유리 생지 제조업” <포함> • <u>광학유리생지 제조</u>	• “광학유리생지 제조”로 정정	• 오식을 정정함
“28111: 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금속제의 각종 <u>철물</u> 및 산업활동을 말한다.	• “철문”으로 정정	• 오식을 정정함
“2930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제외> • 이온정수기 제조, 전기식 (<u>29305</u>)	• “(31909)”로 정정	• 전기식 이온정수기 제조는 “31909(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에 분류

현행분류	개정사항	개정사유
“36932: 코드 및 펠드게임장비 제조업”	· “코드” 로 정정	· 오식을 정정함
“512: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국내에서 <u>비식용</u> 농축산물, 산업활동을 말한다.	· “비식용” 삭제	· 오식을 정정함
“51311: 가정용 섬유, 사 및 직물제품 도매업” <포함> · <u>카펫도매</u>	· “카펫도매” 삭제	· 카펫도매업은 “51326(벽지, 양탄자 및 유사 마루 덮개 도매업)에 분류되어 있음
“60232: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업” <포함> · <u>현금 및 귀금속 운송</u>	· “현금 및 귀금속 운송” 삭제	· 현금 및 귀금속 운송은 “74922(경호 및 경비업) 으로 분류되어 있음
“630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운수관련 대리 서비스업” <포함> · <u>가운</u> 운송관련 서비스	· “가운”으로 정정	· 오식을 정정함
“6599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금융업”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금융업으로서 여신 이외의 기타 금융중개활동 포함된다.	· “중개” 삭제	· “금융중개활동”은 “67199(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분류되어 있음

현행분류	개정사항	개정사유
<p>“7122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임대업”</p> <p>운전자없이 건설 또는 <u>광산용</u> 기계장비 말한다.</p> <p><포함> · <u>광산용</u> 기계장비 임대(운전자 없이)</p>	<p>· “토목공사용”으로 정정</p>	<p>· “71220(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임대업)과 용어를 동일하기 위하여 정정</p>
<p>“73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p> <p><포함> · 법학연구개발 · · · <u>법학연구개발</u></p>	<p>· “법학연구개발” 삭제</p>	<p>· 법학연구개발의 중복으로 오식을 정정함</p>
<p>“74215: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업”</p> <p><포함> · <u>건축</u>, 기계설계서비스</p>	<p>· “건축” 삭제</p>	<p>· 건축설계서비스는 “74212(건축관련 기술서비스업)에 분류되어 있음</p>
<p>“93092: 육탕업”</p> <p>대중탕, 독탕, <u>터키탕</u>, 사우나탕, 증기탕, 일반 육실 및 포함된다.</p>	<p>· “터키탕” 삭제</p>	<p>· “터키탕”이 “증기탕”으로 사용되고 있음</p>